노인장기요양시설

* 목차

- 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개관
-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 3.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장탐방

* 학습목표

- 1. 노인복지시설와 장기요양시설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 3.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개관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이란

- 노인이 신체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렵거나, 정서 적인 안녕을 위하여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 노인복지시설에는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구분	시설명	기능 등
노인주거	양로시설	입소하여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10인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 같은 주거여건, 급식, 일상생활 편의 제공(5-9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주거, 상담, 안전관리 등 임대하여 편의 제공
1.이이코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 노인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급식·요양·일
녹시시설	- 도인요상등동생활기생	상생활 편의 제공
노인여가	노인복지관	교양·취미활동, 건강·소득보장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경로당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장소제공
복지시설	노인교실	노인에게 취미·건강·소득보장 등 학습프로그램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 장애 있는 재가노인에게 편의 제공
재가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장애노인을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 편의 제공
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장애노인을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 편의 제공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 갖추고 재가노인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전문 수행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피해노인을 보호,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 수급권자, 미부양보호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기타는 입소비용 전부 납부
- 노인복지주택: 독립 주거생활 지장 없는 60세 이상 자(임대 혹은 분양계약)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도지사가 기관을 지정·운영
- 노인학대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긴급전화(1577-1389) 운영
- 노인여가복지시설
- 이용대상 60세 이상(경로당은 65세)
- •시설기준 : 복지관 500m² 이상, 경로당 20명·20m²이상(읍·면 10명), 노인교실 50명·33m² 이상
- 시설의 설치·운영
 -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민간)가 설치 가능
 - 민간이 설치 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며, 시설기준 등을 적용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요소
 - 인력관리, 재정,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 시설의 의무
 - 설립, 변경, 폐지 및 휴지의 신고의무(제40조)
 - 수탁의무: 노인의 입소 등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입소자 현황의 복지실시기관에 제출의무

(2) 장기요양시설

○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 인구 수 및 치매노인 수(추계)

(단위: 천명,%)

구분	2008	2010	2020	2030	2040	2050
노인인구	5,016	5,357	81,300	11,811	15,041	16,156
치매노인	421	469	780	1,135	1,685	2,217
치매 유병률(%)	8.4	8.8	9.7	9.6	11.2	13.2

- 장기요양보험 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장기보험사업의 기본원칙
- 적정성의 원칙 : 노인 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
- 재가급여 우선원칙 : 노인 등이 가정에서의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
- 의료연계 원칙: 노인 등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법률상 강제가입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가입자는 아니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적용대상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재가: 15%, 시설: 20%)
- 장기요양 인정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부여
- 신청→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공단)→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 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 신청자격: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 가진 자

○ 장기요양시설이란

- 노인설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장기요양보험제도 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0 - , ,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등 지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레기 그성	0 6 6 4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 제공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요양기관에 보호						
	1 7255	하여 신체활동, 교육·훈련 등 제공						
	미기 내 중	수급자를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						
	단기보호	체활동, 숙식 등 제공(1회 90일, 연 180일)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생활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 방문						
	/ / / /	하여 재활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기열비역		입소하여 신체활동, 교육·훈련 등을 제공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일정한 방문요양						
	/ 무효장미	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특별현금급여	특례요양비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이 아버 이 기내 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용의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						

○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인력기준을 갖추어
-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 관의 시설로서 인력기준을 갖추어
-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시설기준

구분		침실	사 무 실	요양보호설	자 원봉사실	간 호 사 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재 해 대 비 실	화장실	세면목욕실	세탁건조장
노인	입소자 30명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10-30명	0	0			0	0	0	0		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0		()		()	0	0		0	

○ 인력배치기준

(단위 : 명)

구분		시 설 장	사무국장	사회복 지 사	계 약 의 사	간 호 사	물리치료사	요 양 보 호 사	사 무 원	영 양 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1	(1)	1	1	2	1	입소자 2.5당1	(1)	(1)	2	1	(1)
	입소자 10-29명	1		Ĺ	1	1		입소자 2.5당1			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9명)			1			-	1	입소자 3당1			0		

*사무국장·사무원·영양사·관리인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만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위생원 : 입소자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간호사·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주·야간보호서비스 기준

- 정원 : 5명, 10명 이상

- 시설 : 90m² 이상, 단독·공동주택 설치 가능

거실, 사무실 및 의료실, 훈련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구비

- 직원(10명 이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치료사. 요양보호사(7명당 1명) 등

- 기능 :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기능 회복, 급식, 목욕, 교육 및 상담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1)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급여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며, 요양등급 및 급여 종류 등 고려 산정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원칙

- 인권보호 : 차별·학대금지, 존엄한 존재로 처우

-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의 자기결정과선택권 존중

- 자립생활 : 가능한 한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 재가요양 우선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

- 사례관리 :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에 따라 충분히 제공

- 비밀보장, 기록 및 공개
- 사회통합: 교류, 참여 지원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인력과 시설 확보
- 부당청구 금지, 알선행위 금지
- 장기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
-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비용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 급여비용의 산정
-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본인일부부담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의료급여수급권자, 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사유자)

(2) 노인장기요양시설 프로그램(예시)

일상생활 프로그램	치매예방체조, 외출프로그램(사우나·장터·영화관·지역축제등), 레크리에이션(노래·악기등), 여가활동(미술·아로마·영화등), 일상생활훈련, 이·미용(월1회), 위생(기저귀교환·입욕·치위생·손발톱관리·세면·면도등), ADL(의복착탈·세면·보행훈련등)
기능회복 프로그램	신체기능(생활체육·실버체조·단전호흡·밴드체조·공굴리기·볼링게임·카프라·풍선배구) 인지기능(원예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작업치료·회상요법·언어치료·웃음치료) 치매예방(노래·민요·리본공예·실버레크레이션·스토리텔링·발맛사지·안마·구연동화), 개별(복도걷기·만다라색칠·장기·화투놀이·윷놀이)
의료건강 프로그램	정기건강검진, 입소자 간호 및 치료(혈당·혈압·체중·구강·욕창·수지침·투약·드레싱), 외래진료(외래·입원치료·응급관리), 만성통증치료(요통·관절·압박골절), 자극치료(온 열·전기자극·초음파·파라핀치료), 안마기, 물리치료, 뇌졸중재활, 보행훈련, 침상훈련 (윌리암·관절수동·능동보조·저항운동·골반들기·롤링운동), 기본동작훈련(섯다앉기·균 형감각유지·직립유지·계단오르기·휠체어조작)
정서지원 프로그램	생신잔치, 일일나들이, 명절행사, 송년행사, 절기행사, 실버투어(분기1회)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정통신문발송, 신규가족간담회, 가족교육, 가족송년행사, 가족자조모임, 가족화상 상봉, 가족면담
특화 프로그램	청소년연계프로그램, 스노즐렌프로그램, 행복명상

* 학습평가

- 1. 다음 중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종류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
 - ③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전용쉼터

정답:5

(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전용시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다

- ① 노인양로시설
- ② 노인요양시설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④ 노인복지주택
- ⑤ 노인단기보호시설

정답:3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및 65세 미만자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 3. 다음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장기요양제공기관은 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위원회에 청구한다.
 -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④ 장기요양제공기관은 크게 시설급여기관과 재가급여기관이 존재한다
 - ⑤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통합하여 고지한다.

정답 4

(노인 및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환자가 대상이다. 급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보험료는 통합 징수하고 구분 고지한다)

* 학습요약

-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여가시설에는 복지관과 경로 당, 노인교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등의 시설이 있다
-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혹은 65세 미만자로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행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그 대상이며 강제 가입하며, 재원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 가급여 제공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로서 각각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